

e-KIET 산업경제정보

의료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과 정책과제

[요 약]

- 의료서비스와 관광이 융합된 의료관광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블루오션으로 부상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
- 세계 의료관광시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의료관광 후발주자인 우리나라 시장도 빠른 성장세 시현
 - 우리나라는 외국인환자 유치 증가로 2011년에 건강 관련 여행수지가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
- 우리나라 의료관광산업의 종합경쟁력은 OECD 34개국 중 19위
 - 시설·장비 2위, 의료서비스 4위, 기술수준 9위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기록하여 상당한 경쟁력 보유
 - 그러나 의료인의 양적 규모인 인적 자원은 31위, 관광산업 성장성은 33위로 최하위 수준
 - 부문 간 현저한 격차로 인해 의료관광산업의 불균형 구조 심화
- 향후 우리나라가 아시아 의료관광 허브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법정부차원의 효율적 지원, 국제네트워크 활용 등의 방안 마련 필요
 - 경쟁국과의 우위 확보를 위한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시범사업 추진
 - 법정부차원의 추진단을 설립하여 효율적 지원으로 전환
 - u-health 서비스 허용범위 확대를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가속 및 지속적 수익 창출
 - 국제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국내 의료인력난 해소, 한국형 의료시스템 수출 확대 등

□ 의료관광의 블루오션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 심화

- 의료서비스와 관광이 융합된 의료관광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블루오션으로 부상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임.
 - 의료관광은 진료비용이 저렴하고 의료서비스 및 휴양 시설이 잘 갖추어진 아시아 지역의 관광지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태국, 싱가포르, 인도 등이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음.
 -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2011) : 태국(156만 명), 싱가포르(72만 명), 인도(73만 명)
 - 태국은 의료서비스와 스파(spa)·마사지 등 건강관리서비스, 관광자원 등이 결합된 상품개발을 통해 의료관광의 대표적인 국가로 성장함.
 - 싱가포르도 의료관광사업의 기획·지원 전담조직인 ‘싱가포르 메디슨(Singapore Medicine)’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하여 해외환자 유치에 성공함.
- 최근에는 신흥국을 선호하는 새로운 의료관광 패턴으로 인해 아시아에서 특히 의료관광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 자국에서의 대기시간 해소¹⁾, 선진국의 무의료보험자들의 해외원정 치료 증가, 신흥국의 값싼 의료비와 의료기술 수준 향상 등이 그 배경으로 작용함.

□ 세계 의료관광시장은 크게 확대 중

- 세계 의료관광시장 규모는 2004~2012년 기간 동안 약 2.5배나 성장하여

1) 미국과 영국의 경우, 치료를 위한 대기시간은 심장수술, 척추수술, 파킨슨병 등이 9~11개월, 뇌종양 6~8개월로 나타남. 자세한 내용은 C.B. Venkata Krishna Prasad, “Medical Tourism Industry-Advantage India”, *Conference on Global Competition & Competitiveness of Indian Corporate*, 2008을 참조.

2012년에는 약 1,000억 달러로 추정됨.²⁾

- 세계시장 규모는 2004년 400억 달러에서 2007년 600억 달러, 2012년에는 1,000억 달러로 추산됨.

○ 각국의 국민소득 및 기대수명 증가로 해외로 이동하는 의료관광객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 의료관광객 수 추이는 2005년 1,900만 명에서 2010년 4,000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³⁾

○ 한편, 의료산업을 포함하는 보건산업의 세계 및 국내시장 규모도 급속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고, 특히 국내시장 증가율이 세계시장 증가율을 현저하게 상회함.⁴⁾

- 세계시장 규모는 2006년 3조 3,710억 달러에서 2010년 4조 120억 달러로 19.0% 증가한 데 비해, 국내시장 규모는 2006년 55조 3,810억 원에서 2011년 73조 2,000억 원으로 32.2%나 증가함.

□ 우리나라는 의료관광 후발주자로서 빠른 성장세 유지⁵⁾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관광의 대표지표인 외국인환자 방문객 수는 매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9~2011년 기간에 두 배 이상의 높은 성장을 보임.

2) McKinsey & Company and the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cited in Laura Moser, "The Medical Tourist", Slate, December 6, 2005.

3) RNCOS (2008),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자료(2009.6.25.)에 근거함.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통계(www.khiss.go.kr)에서 산출함.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통계(www.khiss.go.kr),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 등을 참조.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선정된 2009년 이래 급속한 성장 추세를 나타냄.

·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은 2009년 6만 201명에서 2011년 12만 2,297명으로 103% 증가함.

· 국적별 외국인환자 비중은 2011년에 미국 27.0%, 일본 22.1%, 중국 18.9%, 러시아 9.5%, 몽골 3.2%의 순으로 나타남.

○ (진료수익) 외국인환자에 의한 총 진료수익 및 1인당 평균 진료비도 2009~2011년 기간 각각 82.0%, 26.6% 증가함.

· 총 진료수익(억 원) : 547(2009) → 1,032(2010) → 1,809(2011)

· 1인당 평균 진료비(만 원) : 94(2009) → 131(2010) → 149(2011)

〈표 1〉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외국인환자 유치		총 진료수익		1인당 평균 진료비	
	환자 수(명)	증가율(%)	수익(억 원)	증가율(%)	진료비(만 원)	증가율(%)
2009	60,201	-	547	-	94	-
2010	81,789	35.9	1,032	88.7	131	39.4
2011	122,297	49.5	1,809	75.3	149	13.7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통계(www.khiss.go.kr),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를 토대로 재구성.

〈표 2〉 진료유형별 외국인환자 비중

단위 : %

	2009	2010	2011	2009~2011 평균
내과	20.5	13.5	15.3	16.4
피부·성형외과	13.7	14.0	12.7	13.5
가정의학과	8.0	9.8	8.7	8.8
검진센터	13.9	13.1	8.3	11.8
산부인과	6.2	5.6	7.7	6.5
한방과	2.9	4.1	5.9	4.3
정형외과	5.0	4.9	5.0	5.0
기타	29.8	35.0	36.4	33.7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통계(www.khis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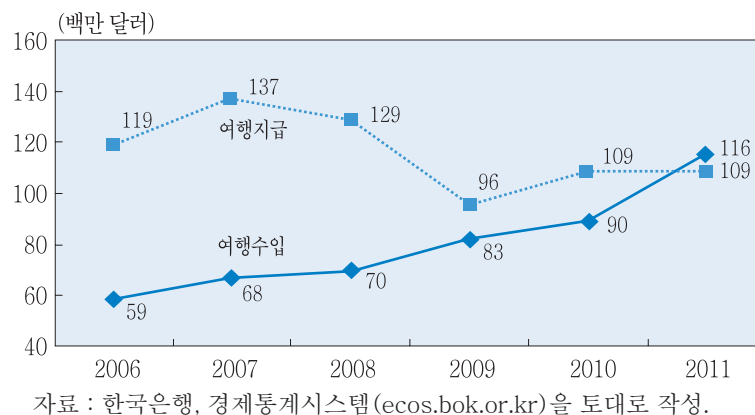
○ (진료유형별) 진료과별로는 2011년 기준으로 내과, 피부·성형외과, 가정의학과, 검진센터, 산부인과 등이 상위 5위를 차지함.

– 검진센터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비해, 한방과의 비중은 점진적 증가를 보이는 것이 특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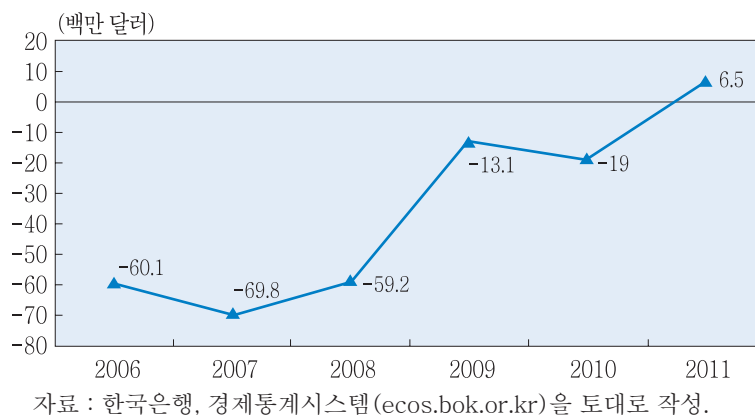
□ 외국인환자 증가로 건강 관련 여행수지 사상 첫 흑자 기록

○ 건강 관련 여행수지는 외국인환자 유치 증가와 내국인의 해외 원정치료 문화의 영향으로 2006년 집계 이후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함.

〈그림 1〉 건강 관련 여행수입·지급 추이



〈그림 2〉 건강 관련 여행수지



- 2007년 6,980만 달러 적자에서 2011년 650만 달러 흑자로 전환됨.
- 이는 2006~2011년 기간 동안 건강 관련 여행수입액이 연평균 14.4% 성장한 데 반해 건강 관련 여행지급액은 1.7% 감소한 데 기인함.

□ 우리나라 의료관광산업의 종합경쟁력은 OECD국가 중 19위

- 의료관광산업 경쟁력의 개념을 ‘투입요소 및 인프라, 잠재력의 개선을 통한 산출물(경쟁력) 증대’로 규정하고 이들과 관련된 지표⁶⁾ 중심으로 구성하여 경쟁력지수를 산출함.⁷⁾
 - 기술수준·인프라 지표 : 기술수준·인적 자원 등의 투입요소, 시설·장비의 인프라
 - 성장성 지표 : 관광산업·의료서비스산업 등의 잠재력
-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종합경쟁력지수는 OECD 평균을 0으로 환산했을 때 이를 약간 상회하는 0.005로 OECD 34개국 중 19위를 차지함(〈부표〉 참조).
 - 상위 5위는 일본,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덴마크의 순임.⁸⁾
- 기술수준·인프라 부문의 경쟁력은 양의 지수(0.102)를 보이는 반면, 성장

6) 분석 시 데이터는 기술수준·인적 자원, 시설·장비, 의료서비스 등은 Health at a Glance 2011(OECD)을, 관광시장은 STS(OECD), UNWTO, WTTC, WEF의 자료를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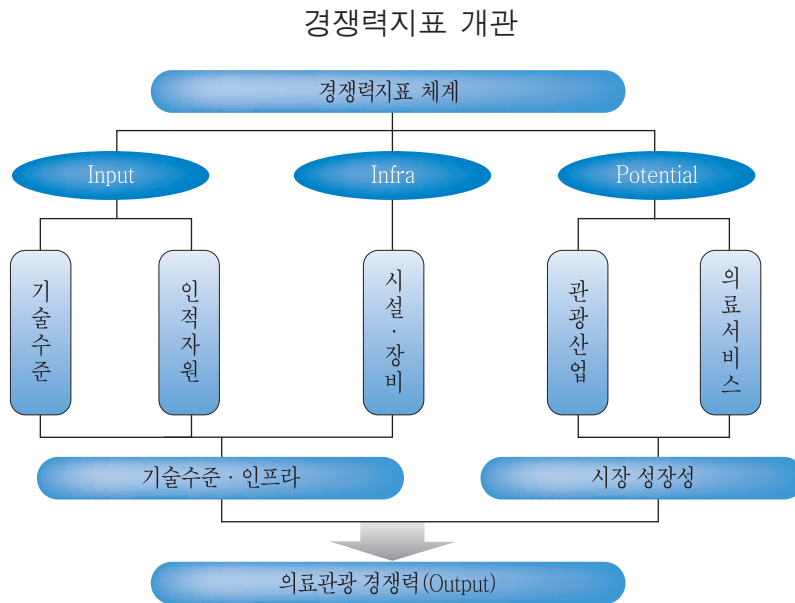
7) 경쟁력지수 산출 시 다음과 같은 3단계 분석방법을 사용함. 1단계는 해당지표에 결측치가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는 동일 부문 내 평균비율을 구하고 이를 동일 부문의 OECD 전체 평균치에 곱하여 추정하였음(산출 공식 : $x_i = Average(\frac{x_j}{\bar{X}_j}) \times \bar{X}_i (\forall j \neq i)$). 2단계는 특정지표가 현저하게 높고 낮음에 따라 종합경쟁력지

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개별지표를 10점 척도로 통일함($x_i = \frac{x_i - Min(x_j)}{Max(x_j) - Min(x_j)}$).

3단계는 10점 척도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반영한 표준화 지수를 산출함($x_i = \frac{x_i - \bar{X}}{S}$, 단, S: 표준편차, \bar{X} : 표본평균).

8) 주요국 순위는 스위스 6위, 미국 7위, 독일 8위, 프랑스 17위, 캐나다 21위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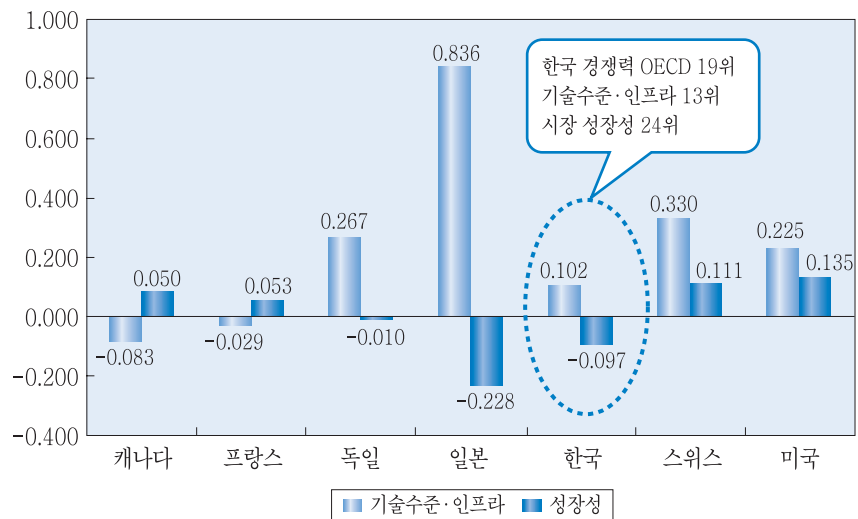
<그림 3>



자료 : 산업연구원.

<그림 4>

주요국 기술수준·인프라 및 성장성 부문의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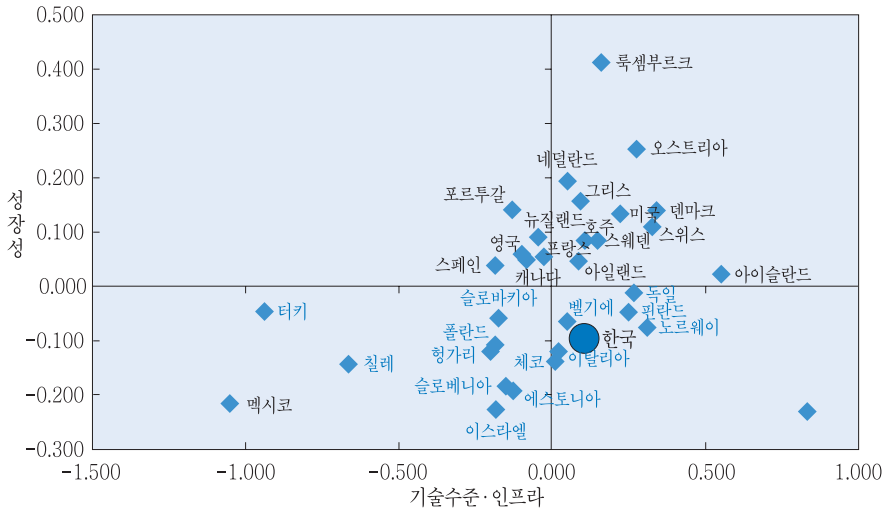


자료 : 산업연구원.

성 부문은 음의 지수(-0.097)로 나타나 부문 간 불균형 구조가 심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 같은 불균형 구조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쟁력 유형은 기술수준·인프라 수준은 높은 반면 성장성은 낮은 4사분면에 위치함.

<그림 5> 경쟁력에 따른 유형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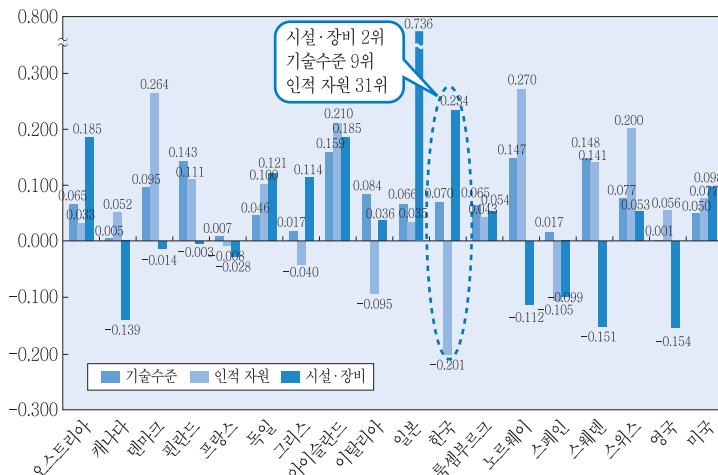
자료 : 산업연구원.

□ 기술수준·인프라 부문의 경쟁력은 13위

○ 기술수준·인프라 부문의 경쟁력지수는 0.102로 OECD국가 중 13위이나, 개별지표별 경쟁력은 부문 간 현저한 격차가 존재함.

- 인프라 부문은 최상위권인 2위, 의료기술수준은 9위를 차지한 데 비해, 인구당 의료인 수를 나타내는 인적 자원은 최하위 수준인 31위에 불과함.

<그림 6> 기술수준·인프라 부문 내 경쟁력



자료 : 산업연구원.

<표 3> 암 5년 생존율 비교

단위 : %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암 전체	64.1	65.4	62.0	54.3
위	67.0	26.9	24.0	62.1
간암	26.7	16.0	18.0	23.1
대장	72.6	64.3	63.0	65.2
유방	91.0	88.9	88.0	85.5
폐	19.7	15.9	16.0	25.6
췌장	8.0	5.8	6.0	6.7
전립선	90.2	99.2	96.0	7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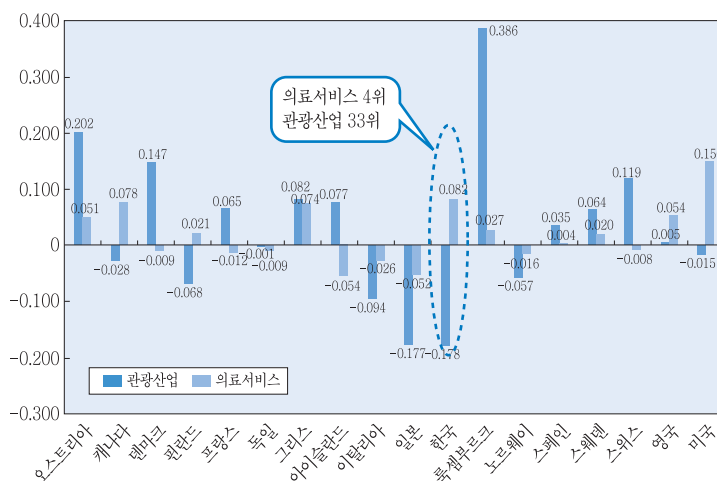
자료 :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

- 질적 의료기술수준을 대표하는 ‘암 5년 생존율’ 일부 항목의 주요국 비교에 서는 우리나라가 미국 및 캐나다, 일본보다 우위를 차지함.

□ 성장성 부문의 경쟁력은 24위

- 성장성 경쟁력지수는 OECD 평균을 밑도는 -0.097로 중하위권인 24위를 차지함.
 - 이 같은 결과는 의료서비스지수는 0.082로 최상위권인 4위에 속하나, 관광산업지수가 -0.178로 최하위권인 33위에 머문 데 기인함.
- 관광산업의 개별지표에 관한 지수는 모두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마이너스를 나타내지만, 의료서비스의 경우는 GDP 대비 국민의료비를 제외하면 모든 지표에서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 잠재력을 의미하는 성장성 내부의 부문 간에도 경쟁력 격차가 크게 존재함.

<그림 7> 성장성 부문 내 경쟁력



자료 : 산업연구원.

<표 4> 성장성 지표별 경쟁력

	개별지표	경쟁력지수
관광산업	여행수입	-0.024
	관광수입	-0.033
	관광산업 고용	-0.043
	관광경쟁력	-0.078
의료서비스	국민의료비	-0.054
	1인당 국민의료비 성장률	0.099
	의료시설 투자	0.017
	평균수명	0.019

자료 : 산업연구원.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방안 마련 필요

- 향후 우리나라가 의료관광산업의 아시아 허브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차별화된 세부 사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경쟁국과의 우위 확보를 위한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시범사업 추진 및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 지원, 외국인환자 유치 차별화,
 - 우수한 인프라 활용을 위해 u-health 서비스 허용범위 확대를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및 지속적 수익 창출,
 - 수준 높은 의료기술을 활용한 중증환자 유치 전략,
 - 국제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국내 의료인력난 해소, 한국형 의료시스템 수출 확대 등이 필요함.

〈표 5〉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부 사업 추진 방안

	No.	정책과제
의료관광 활성화 (전반)	1	관광특구·경제자유구역 내 영리의료법인 시범사업 추진
	2	'글로벌헬스케어추진단(가칭)' 발족을 통한 범정부적 지원 강화
	3	외국인환자 유치 차별화 전략
인프라	4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한 원격진료 등 규제완화
기술수준	5	높은 의료기술을 이용한 중증질환자 유치
인적 자원	6	외국인 의료인 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인력난 해소 및 한국형 의료시스템 수출 도모

□ 관광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시범사업 추진

-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산업이 아시아 경쟁국의 대규모 영리의료법인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자본을 용이하게 조달하기 위해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⁹⁾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에 대한 이익단체 간 이견이 단기간에 조정되기 어려우므로 관광특구 및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제한된 지역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환자나 질환의 범위를 제한한 시범사업을 통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운영하여 부작용이 없을 경우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합리적임.
 - 제주특별자치도와 녹색기후기금(GCF)·아시안게임 유치로 국제도시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송도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환자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제주도는 관광산업 특화지역으로 ‘관광+치료+요양’의 연계 서비스 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송도 신도시는 ‘비즈니스+치료+주변지역(수도권·강원도) 관광’의 프로그램 개발이 용이하며 국제도시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형병원 설립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글로벌헬스케어추진단(가칭)’ 발족을 통한 범정부적 지원 강화

- 효율적 의료관광사업 추진을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의 범정부적 ‘글로벌헬스케어추진단(가칭)’을 설립하여 부처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보건복지부는 전문인력양성·해외홍보·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의료관광객 유치를, 산업통상자원부는 병원 해외진출·

9)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 공포(2012.10.29.), 시행 중이나 아직 국내 의료기관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은 허용되지 않은 상황임. 제도적으로 외국 의료기관의 투자개방형 법인 설립의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임.

u-health 산업 활성화 등에 주력하여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부처 간 역할분담이 명시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임.

- 또한 부처의 산하단체를 중심으로 의료관광산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관 간 협력 및 연계가 부족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타깃국가 다변화 및 국가별 해외환자 유치 전략 차별화

- 국가별 현지 의료여건 및 주요 질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환자유치 전략을 모색해야 함.

- 예컨대, 중국의 경우는 고소득층 기호에 부합하는 의료서비스상품 개발, 일본은 건강검진과 같은 비급여분야 집중 공략, 미국은 보험수가가 높으므로 미국교포 등을 대상으로 한 상품개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별 주요 질환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가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야 함.

· 국가별로 주요 발생 질환이 크게 상이하므로 이들 질환을 면밀히 분석한 후 국가별 주력상품에 대한 홍보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중동 등 신흥시장 개척을 통한 수요국 다변화를 위해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강화로 지속적 및 안정적인 해외환자 유치 채널을 구축해야 함.

- 우리나라를 찾는 의료관광객은 미·일·중에 편중되어 있어 고소득국인 중동의 환자 비중은 1% 미만으로 유치실적이 미미한 편임.

□ 규제완화를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가속 및 지속적 수익 창출 활성화

- (원격의료) 원격진료 관련 의료법을 개정하여 u-health 서비스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국내병원 거점을 해외에 확보함으로써 외국인환자 유치에 적극 활

용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행위 규정이 없어 해외환자 유치에 한계가 있음.
- 또한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기 개발된 원격건강관리 기술 상용화가 어려운 상황임.
- 환자가 입국하기 전에 원격진료를 이용하여 자국에서 기초진단을 한 후 우리나라에서 진료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해외환자 유치에 기여할 수 있음.
- 해외환자가 귀국한 후에도 원격진료·원격건강관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함.

○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 5% 제한) 현행 의료법은 내국인 진료권 보호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병상 수를 허가병상 수의 5%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정도 검토되어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에 해외환자 유치 한도를 사전에 정하는 것은 병원 간 환자유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시행규칙 철회를 권고한 바 있음.

□ 수준 높은 의료기술을 활용한 중증환자 유치

- 현재 경증질환자 외국인환자 중심에서 중증질환자 유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외국 보험사와의 연계 강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향후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중증질환자 중심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환자의 소개·알선·유인 행위가 허용되는 외국 보험사와의 연계 강화가 절실한 시점임.
- 우리나라도 보험상품과 연계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보험업자의 해외 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2012.11)한 상태임.

□ 국제네트워크를 확대하여 해외환자 유치 및 현지사업 극대화

- 외국인 의료인력의 국내연수를 확대하여 국제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의료인력난 해소와 현지사업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외국의료인 진료행위 제한적 허용) 외국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승인 절차를 현실화하여 국내연수 중인 외국의료인의 제한적 진료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인력난을 해결하고 교육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음.
 - 현행 의료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의료인 면허소지자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한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이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승인 절차 등의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는 대부분 참관 중심의 연수 프로그램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한국형 의료시스템 수출) 연수 의료진의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병원의 해외진출 공동추진으로 한국형 보건의료시스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맞춤형 연수프로그램 개발) 의료관광 신흥시장 발굴 및 의료 연수생 다

양화를 위해 해당 국가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허 문 구	조 현 승	김 동 수
(연구위원·지역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서비스산업연구센터)	(연구위원·지역발전연구센터)
mungu@kiet.re.kr	hscho@kiet.re.kr	kim.dongsoo@kiet.re.kr
02-3299-3219	02-3299-3216	02-3299-3102

<부표>

경쟁력 분석결과

	부문별 경쟁력지수					종합경쟁력지수					
	기술수준 및 인프라			시장 성장성		기술수준 및 인프라		시장 성장성		의료관광 종합경쟁력	
	기술 수준	인적 자원	시설 장비	관광 산업	의료 서비스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일본	0.066	0.035	0.736	-0.177	-0.052	0.836	1	-0.228	34	0.608	1
아이슬란드	0.159	0.210	0.185	0.077	-0.054	0.554	2	0.022	17	0.576	2
룩셈부르크	0.065	0.043	0.054	0.386	0.027	0.162	10	0.413	1	0.575	3
오스트리아	0.065	0.033	0.185	0.202	0.051	0.283	6	0.253	2	0.536	4
덴마크	0.095	0.264	-0.014	0.147	-0.009	0.345	3	0.138	6	0.483	5
스위스	0.077	0.200	0.053	0.119	-0.008	0.330	4	0.111	8	0.441	6
미국	0.050	0.077	0.098	-0.015	0.150	0.225	9	0.135	7	0.360	7
독일	0.046	0.100	0.121	-0.001	-0.009	0.267	7	-0.010	18	0.257	8
그리스	0.017	-0.040	0.114	0.082	0.074	0.092	14	0.156	4	0.248	9
네덜란드	0.001	0.100	-0.048	0.043	0.152	0.053	16	0.195	3	0.247	10
노르웨이	0.147	0.270	-0.112	-0.057	-0.016	0.305	5	-0.073	23	0.232	11
스웨덴	0.148	0.141	-0.151	0.064	0.020	0.138	11	0.084	10	0.223	12
핀란드	0.143	0.111	-0.003	-0.068	0.021	0.251	8	-0.046	20	0.205	13
호주	0.063	0.055	-0.001	0.054	0.028	0.116	12	0.082	11	0.199	14
아일랜드	0.016	0.168	-0.093	-0.020	0.067	0.091	15	0.046	15	0.137	15
뉴질랜드	0.032	0.046	-0.122	0.032	0.058	-0.044	21	0.090	9	0.046	16
프랑스	0.007	-0.008	-0.028	0.065	-0.012	-0.029	20	0.053	13	0.024	17
포르투갈	0.021	-0.094	-0.056	0.140	0.000	-0.129	25	0.140	5	0.011	18
한국	0.070	-0.201	0.234	-0.178	0.082	0.102	13	-0.097	24	0.005	19
벨기에	-0.088	0.120	0.020	-0.065	0.000	0.052	17	-0.065	22	-0.013	20
캐나다	0.005	0.052	-0.139	-0.028	0.078	-0.083	22	0.050	14	-0.033	21
영국	0.001	0.056	-0.154	0.004	0.054	-0.096	23	0.059	12	-0.038	22
이탈리아	0.084	-0.095	0.036	-0.094	-0.026	0.026	18	-0.121	27	-0.095	23
체코	0.012	-0.036	0.036	-0.045	-0.089	0.012	19	-0.134	28	-0.122	24
스페인	0.017	-0.105	-0.099	0.035	0.004	-0.187	30	0.039	16	-0.148	25
슬로바키아	-0.098	-0.097	0.020	-0.144	0.085	-0.176	27	-0.059	21	-0.235	26
폴란드	-0.031	-0.155	0.001	-0.116	0.007	-0.186	29	-0.109	25	-0.295	27
헝가리	-0.059	-0.110	-0.025	0.125	-0.242	-0.194	31	-0.118	26	-0.312	28
에스토니아	-0.019	-0.076	-0.032	-0.097	-0.095	-0.127	24	-0.193	31	-0.319	29
슬로베니아	-0.064	-0.021	-0.071	-0.219	0.035	-0.155	26	-0.184	30	-0.340	30
이스라엘	0.108	-0.111	-0.181	-0.119	-0.108	-0.183	28	-0.227	33	-0.410	31
칠레	-0.129	-0.335	-0.196	-0.088	-0.056	-0.660	32	-0.144	29	-0.805	32
터키	-0.493	-0.321	-0.127	-0.048	0.003	-0.941	33	-0.045	19	-0.987	33
멕시코	-0.534	-0.275	-0.239	0.006	-0.218	-1.048	34	-0.212	32	-1.261	34

자료 : 산업연구원.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